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85
----------	------

2023년 9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 상정일자 :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9월 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 제안이유

-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는 강서구 권역의 초등아동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아동들에게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거점형 키움센터와 함께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통해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결합한 사회복지시설임.

- 거점형 키움센터는 초등아동의 자유로운 놀이와 쉼의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내 아이돌봄 기관·자원을 수평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초등돌봄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키즈카페를 결합하여 아동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시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안전한 놀이와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운영
 - 조직·인사관리, 예산집행 및 회계·계약, 물품 및 재산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 초등돌봄 서비스 기획 및 문화·예술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 초등돌봄 자원의 유기적 연계·조정 및 지역특화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한 놀이 공간 운영

- 적절한 이용비용 책정을 통해 키즈카페 이용에 대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전담인력 활용하여 돌봄·놀이 복합시설로 운영
- 위탁기간 : 5년(2024. 4. ~ 2029. 4.)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23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23.7.26.)
- '24년 소요예산(안) : 1,425백만원
 - (키움센터) 884백만원 / (키즈카페) 541백만원

나.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강서구 화곡동 1027-29 일원 (강서구 화곡1주택 재건축사업)
- 규 모 :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86.49㎡)
- 사용면적 : 지상 1~2층, 기부채납시설 활용
 - (키움센터(2층)) 584.69㎡ (177평)
 - (키즈카페(1층)) 538.99㎡ (163평)
- 이용아동 및 종사자 정원 : 아동 130명 / 종사자 15명
 - (키움센터) 아동 80명/ 종사자 9명
 - (키즈카페) 아동 50명/ 종사자 6명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 돌봄센터)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 위탁)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 필요성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대규모의 시립 사회복지시설로 10명 내외의 인력관리 및 초등학생 대상 문화·놀이·예술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돌봄 서비스 제공 등 거점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사회와 수평적 연계를 통해 아이돌봄 협력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연계·매칭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자원 활용이 필요함.
-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동의 안전한 놀이 및 돌봄을 비롯하여 아동 대상 프로그램(IT 기반 실감형 체험 프로그램 포함) 진행 등 놀이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법인·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 돌봄센터)]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제4조의3제1항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임.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돌봄 공백 해소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놀이공간 운영과 예산 집행 및 회계·계약, 시설물유지와 재산관리 등임.

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²⁾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①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 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5, 2021.12.30>

2)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움센터 운영’ 관련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³⁾ 및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⁴⁾에서 시장이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키즈카페 운영’ 관련해 「아동복지법」 제53조⁵⁾ 및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의2제1항⁶⁾에 따라 시장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키움센터 및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
- 「민간위탁조례」 제4조⁷⁾ 및 제6조⁸⁾ 등에서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4)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5)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의2(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요하는 사무'로서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문화·예술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과 일반·융합형 센터를 포함한 돌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하는 거점형 키움센터와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비롯하여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놀이 및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키즈카페의 운영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또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⁹⁾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제2항¹⁰⁾에서 시장은 돌봄시설 운영 및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 거점형 키움센터 및 키즈카페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됨.

·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0., 2012. 12. 31., 2014. 5. 14.>

1.~2. (생략)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생략)

② 삭제 <2014. 5. 14.>

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18., 2009. 7. 30., 2014. 5. 14., 2019. 9. 26.>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8.~9. (생략)

9)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0)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3제1항11)에 따라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 추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 문화·예술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과 일반·융합형 센터를 포함한 돌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하고,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비롯하여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놀이 및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
-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이에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따라서 향후 집행부서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아동 돌봄분야에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거점기관으로서 조정 및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1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①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 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5, 2021.12.30>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85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는 강서구 권역의 초등아동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아동들에게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거점형 키움센터와 함께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통해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결합한 사회복지시설임
- 나. 거점형 키움센터는 초등아동의 자유로운 놀이와 쉼의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내 아이돌봄 기관·자원을 수평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초등돌봄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키즈카페를 결합하여 아동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 시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 다.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안전한 놀이와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기관명 :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 위치 : 강서구 화곡동 1027-29 일원 (강서구 화곡1주택재건축사업)
- 규모 :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86.49 m^2)
- 사용면적 : 지상 1~2층, 기부채납시설 활용
 - (키움센터(2층)) 584.69 m^2 (177평)
 - (키즈카페(1층)) 538.99 m^2 (163평)
- 이용아동 및 종사자 정원 : 아동 130명 / 종사자 15명
 - (키움센터) 아동 80명/ 종사자 9명
 - (키즈카페) 아동 50명/ 종사자 6명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운영
 - 조직·인사관리, 예산집행 및 회계·계약, 물품 및 재산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 초등돌봄 서비스 기획 및 문화·예술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 초등돌봄 자원의 유기적 연계·조정 및 지역특화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
 - 적절한 이용비용 책정을 통해 키즈카페 이용에 대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전담인력 활용하여 돌봄·놀이 복합시설로 운영
- 위탁기간 : 5년(2024. 4. ~ 2029. 4.)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23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23.7.26.)

- '24년 소요예산(안) : 1,425백만원
 - (키움센터) 884백만원 / (키즈카페) 541백만원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 돌봄센터)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 위탁)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 필요성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대규모의 시립 사회복지시설로 10명 내외의 인력관리 및 초등학생 대상 문화·놀이·예술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돌봄 서비스 제공 등 거점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사회와 수평적 연계를 통해 아이돌봄 협력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연계·매칭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자원 활용이 필요함
-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동의 안전한 놀이 및 돌봄을 비롯하여 아동 대상 프로그램(IT 기반 실감형 체험 프로그램 포함) 진행 등 놀이 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법인·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 돌봄센터)]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 2. 위탁계약기간
 -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나. 예산조치 : 2024년 본예산 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아이돌봄담당관 키움센터1팀 서명수 (☎ 2133 - 4815)